

#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방식 경쟁체제 도입

백현미,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Baek Hyunmi, Byun Jaeho  
ETRI

## 요 약

국내에서는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KT가 보편적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지정은 현행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인 KT를 제외한 타사업자들에게 보편적역무 제공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경쟁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매년 규제기관이 산정한 손실금수준에 대해 제공사업자, 손실금분담사업자 모두 불만을 나타내어 손실금 산정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행 지정에 의한 제공사업자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에 의한 제공사업자 선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 및 실행상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각 국 사례를 통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고려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서 론

통신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보편적서비스 제도 또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중립적 제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역무 범위에서부터 손실금 산정방법, 손실금 분담방식 등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제공사업자 신청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제공사업자 신청방식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토대로 제공사업자 신청방식의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을 짚어보기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3 1항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 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에 따라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현재까지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부분에서 KT가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되어 역무를 수행해왔다.

지정에 의한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방식은 KT를 제외한 타사업자들에게 보편적역무 제공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제도의 기본원칙인 비차별성, 객관성, 효율성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이 결정한 손실금 수준에 대해 제공사업자, 분담사업자 모두 불만을 나타내어 매년 손실금 산정과정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공사업자 지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는 제공사업자 선정에 있어 경쟁방식을 도입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스위스, 칠레, 페루 등은 이미 사업자선정 경쟁방식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 Directive에서도 사업자선정에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기회부여의무를 명시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선정 경쟁방식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하기 어려운 손실금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자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제공사업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정에 의해 제공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기존 손실금 수준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1]. 셋째, 가장 비용효율적인 사업자를 제공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넷째, 경쟁사업자가 다